

인천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653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소위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09. 7. 5.경 변제기를 2009. 8. 3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2019. 1. 17.경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19가소756 대여금)을 받고 위 결정은 2019. 2. 12.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C의 딸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8. 7. D 주식회사와 분양가액 3억 2,100만 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중도금 대출금 2억 4,500만 원 상당이 존재하고, 2017. 12. 5. 채권최고액 2억 7,06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22. 4. 8.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근저당권자 F 주식회사,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모인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와 허위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C의 딸로서 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C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해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근저당권 채무 부분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배상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채권 금액인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5. 8. 7.경은 G생인 피고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3,210만 원 및 잔금 6,420만 원 합계 9,630만 원을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나,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인 2015. 8. 7.경 이전부터 2017. 12. 5.경 무렵의 피고의 직장 이력은 2015. 5. 26.부터 2015. 6. 9.까지 H(주), 2015. 8. 2.부터 2016. 1. 19.까지 I한의원에 근무한 게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임에도 C이 피고와 허위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여러 지인들에게 빌리고 약관대출을 받아서 마련한 돈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 이자와 세금을 모두 피고가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이고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